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1호 침선	박광훈	여	1932.7.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이하 생략)
	제29호 등매	최현열	남	1941.8.2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이하 생략)

2. 인정일 : 2017.8.10

3. 인정사유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1호 침선장 박광훈 보유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9호 등매장 최현열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전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4호

반포(저밀)아파트지구 내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 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구명	위치	범위	대지면적
반포아파트지구 (반포지구2)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70,596.0㎡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 업구역	주택용지	233,632.0㎡	35층(110m)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15층(48m)이하] (피로티포함)
	주구중심	19,718.0㎡	5층 이하
	학교	23,106.0㎡	
	공공청사(기정)	3,461.0㎡	5층 이하
	공공청사(신설)	1,210.0㎡	5층 이하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 업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단,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 특례적용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 저층이 배치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 태구현 및 통경축 확보 가능 - 특례적용시 단지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 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하 며,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 가능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전화 : 02-2133-7137), 서
 초구 주거개선과 (전화 : 02-2155-734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